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사 임용 규정

제정 2019.0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및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 제27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 및 담당 교과목) 강사는 공과대학 학과(부)에 소속되어 공과대학에 개설된 교과목을 강의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강사의 소속을 공과대학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임용) ① 강사는 학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연 2회로 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 출산휴가 · 휴직 · 파견 · 징계 · 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 · 퇴직 ·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1장 신규채용

제4조(공개채용원칙) 강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1년 미만으로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5조(접수서류) 지원자는 강사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사공개채용지원서
2. 졸업·학위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3.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4. 경력증명서(교육경력 포함, 해당자에 한함)
5. 총괄연구업적(해당자에 한함)

제6조(채용공고) 학장은 학과(부)장, 협동과정 전공주임, 공과대학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장(이하 “학과(부)장등” 이라 한다)에게 채용공고에 대하여 위임하며, 강사를 공개채용 하고자 하는 학과(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문을 작성하며 학장의 승인을 받아 공과대학 홈페이지 게시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공개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1. 채용분야, 채용인원, 임용예정 시기
2. 지원자격

3. 임용기간
4. 심사사항
5. 제출서류
6.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장소
7. 결과 통지 방법
8. 기타 유의사항

제7조(심사)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학과(부), 협동과정, 공과대학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이하 "학과(부)등"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50점)
   가.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25점)
   나. 교육경력, 총괄연구업적, 산업체경력(25점)
2. 면접심사(50점)
   가. 교육계획(30점)
   나. 임용적합성(20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면접심사 점수는 5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1. 특별채용의 경우
2. 공개채용 지원자의 수가 채용분야의 채용인원 이하인 경우

제8조(심사위원) ① 학과(부)장등은 담당 강의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3명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며, 학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때 단계별 심사위원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과(부)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7조에서 정한 항목 및 비중에 따라 평가하되, 심사위원별 평균점수를 취득점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과(부)등의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서류심사) 학과(부)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1. 학과(부)장등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 교육경력, 총괄연구업적, 산업체경력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자기소개서와 교육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25점)을 평가하며, 교육경력, 총괄연구업적, 산업체경력(25점)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3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나 30점 미만

이면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1조(면접심사 대상자의 선정) 학과(부)장등은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의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2조(면접심사) 학과(부)장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1. 학과(부)장등은 3인의 심사위원에게 교육계획 평가를 의뢰하며, 학과(부)장등은 임용적합성을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교육계획을 교육능력의 우수성(15점), 교육계획의 창의성(15점)으로 판단하여 평가한다.
3. 학과(부)장등은 면접심사 대상자에 대한 임용적합성을 평가하며, 임용적합성은 모집분야와의 합당성(10점), 강사로서의 개성과 품위(10점)로 판단한다.

제13조(채용적격자의 추천) ① 학과(부)장등은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적격자를 학장에게 추천한다.

② 학과(부)장등은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채용적격자로 학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공과대학 인사위원회) ① 학장은 채용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학과(부)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학과(부)등에서 추천한 채용적격자별 채용 가부를 투표하여 채용후보자를 결정한다. 학장이 필요한 경우 학과(부)장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장 재임용

제15조(재임용 기회제공 및 절차) ①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강사(단, 제3조제2항 단서에 의해 1년 미만으로 임용된 강사는 제외한다)의 재임용에 대하여는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의한다.

② 학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강사에게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학장은 해당 강사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의견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학장은 해당 강사에게 의견 등을 진술할 시간과 장소를 15일 전에 통지하고 공과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 진술 등 소명을 하도록 하며,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임용 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은 해당 임용기간 중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단, 강사가 임용기간 중 강의미개설로 인하여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은 심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교육활동(80점)

가. 강의평가 결과(30점)

나. 강의충실도 및 강의 개선 노력(30점) : 휴·보강 현황, 강의 내용 개선 노력, 재임용 후 강의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등(20점) : 임용 이후 교육과 관련되어 수행한 총괄연구 실적, 관련 산업체 경력, 교내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학과(부)장등 평가(20점) : 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근무상황 및 근무자세, 대학(원)등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장이 확인한다.

3. 그 밖에 수상, 서훈, 표창 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가능(5점)

②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 팀 티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과(부)등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과(부)별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학과(부)장등은 제8조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에게 강사의 교육활동을 평가 의뢰하며,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과 학과(부)장등 평가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학장에게 추천하며 학장은 해당 강사를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한다.

④ 그 밖의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공과대학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따른다.

부칙<2019.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서식1]

신규 강사 임용 서류심사 평가표

1.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지원기관			
채용분야			

2. 학과(부)등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배 점	평가점수	비고
모집대상전공(교과) 분야와의 적합성	25		자기소개서와 교육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
교육경력, 총괄연구업적, 산업체경력	25		
합 계	50		평균 30점 이상 적격 30점 미만 부적격

20 . . .

평가자 소속 대학교 대학 학과(부)

성명 (인)

[서식2]

신규 강사 임용 면접심사 평가표
[교육계획]

1.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지원기관			
채용분야			

2. 학과(부)등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교육계획	교육능력의 우수성	15		
	교육계획의 창의성	15		
합 계		30		

20 . . .

평가자 소속 대학교 대학 학과(부)

성명 (인)

[서식3]

신규 강사 임용 면접심사 평가표
[임용적합성]

1.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지원기관			
채용분야			

2. 학과(부)등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임용적합성	모집분야와의 합당성	10		
	강사로서의 개성과 품위	10		
합 계		20		

20 . . .

평가자 학과(부)장 (센터장/협동과정전공주임) 성명 (인)

[서식4]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교육활동]

1.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평가기간	~
소속기관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채용분야					

2. 학과(부)등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교육활동	강의평가 결과	30		
	강의충실도 및 강의 개선 노력	30		휴보강 현황 강의 내용 개선 노력, 재임용 후 강의계획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등	20		임용 이후 교육과 관련되어 수행한 총괄연구실적, 관련 산업체 경력, 교내활동, 사회봉사활동
합 계		80		

20 . . .

평가자 소속 대학교 대학 학과(부)

성명 (인)

[서식5]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
[학과(부)장등 평가]

1.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평가기간	~
소속기관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채용분야					

2. 학과(부)등 심사(다음 각 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점수화함)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기준	배점	평가점수	비고
학과(부)장등 평가	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근무상황 및 근무자세, 대학(원)등에의 기여도 등	20		
	수상, 서훈, 표창 등	5(해당시)		가산점
합 계				

20 . . .

평가자 학과(부)장 성명 (인)
(센터장/협동과정전공주임)

확인자 학장 성명 (인)